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
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봉순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, 공공조형물 관리·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공조형물의 정의(안 제2조)
- 건립 비용부담(안 제5조)
-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(안 제6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- 관리 및 활용(안 제10조 내지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“공공시설”, “공공조형물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, 건립신청, 공공조형물 건립 및 유지·보수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」를 두는데 이 기능을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」에서 대행한다고 규정을 하였음.
-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.

끝.